

## ■ 목 차

###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식 ■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4

###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중국 청도리동화공 유한공사의 자산담보부대출(ABL) 관련 자문..... 7  
 한국 법인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특허 소송 관련 자문..... 8  
 한국 법인의 중국 시안 법인 설립 자문..... 8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고위관리직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자문..... 9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의 모범계약 작성 관련 자문..... 9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홍콩 법인과 지분양수도 항소 관련 자문..... 10  
 한국 법인의 상해 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직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횡령소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자문..... 10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의 지분양수도 회사정리 관련 자문..... 11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법인과 체결하는 독점대리판매계약 관련 자문..... 11  
 한국 모관공사 상해대표처에서 발주한 지적재산권 관련 용역 수행..... 12  
**[베트남]** 롯데마트 베트남 신규 점포 오픈 관련 자문..... 13  
**[인도네시아]** 한국계 석탄광산회사를 대리하여 석탄광산회사가 보유한 계열 석탄광산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인도(India)계 자본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거래 관련 자문..... 14  
 한국계 인도네시아 전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갱신 및 종결 기타 노무관리 관련 자문 제공..... 14  
**[태국]**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태국 내 공장 매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자문..... 16  
 태국 내 공장을 매수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에 대한 자문..... 16  
 태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태국 투자의 법적 형태 국제 조세상의 쟁점에 대한 자문..... 17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태국 진출에 대한 자문..... 17  
**[미얀마]**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 및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 18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식품품 제조회사 설립 관련 자문.....	18
미얀마 현지 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	19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 회사법상 외국회사 설립 관련 자문.....	19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 회사법 계약법 차원의 법적 구조 관련 자문.....	20
미얀마 현지 제조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	20
<b>[러시아]</b> CJ4DX의 러시아 극장 체인과의 사업협력 및 라이선스 관련 자문.....	21
포스코 계열사 러시아 모듈러 사업 관련 자문.....	21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동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와의 컨설팅계약 체결 관련 자문.....	22
한국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UZAVTO와의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23
<b>[필리핀]</b> 대상의 '물엿공장 건설과 합작사업 추진' 관련 자문.....	24

## ■ 해외업무 논단 ■

<b>[중국]</b> 개정 민사소송법 소개.....	25
<b>[베트남]</b>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 (1).....	27
<b>[태국]</b> 태국의 경쟁법 집행 절차.....	32
<b>[미얀마]</b> 미국의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완화(General License 18).....	33
<b>[브라질]</b> 브라질 외국인 투자가이드 (5) - 제조업을 위한 공장건축 시 유의 사항.....	35
<b>[일본]</b> 노동자파견법 개정안 시행.....	38
<b>[러시아]</b> 러시아 경쟁매매 제도 일반.....	40

## ■ 최신 해외정보 ■

<b>[중국]</b> 중국 고온 환경에서의 실외 작업 관련 규정 발표.....	44
<b>[베트남]</b>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World Bank의 제언.....	46
<b>[러시아]</b>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현황리에 개최 라오스 경제성장률 주목 외 1.....	48
<b>[태국]</b> 태국 법인세율 인하.....	49
<b>[미얀마]</b> 글로벌 보험사들의 미얀마 진출 외 1.....	50
<b>[브라질]</b> 브라질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 가속화 외 2.....	52
<b>[일본]</b> 소수력발전 추진에 대한 규제완화 - 국토교통성 내년에 하천법 개정안 제출 방침 외 1.....	54

[러시아]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정 외 2.....56

■ 환경BUSINESS 국제면 기고 ■

[태국] 회복 중인 태국 경제 생산·수출 증가세..M&A 관심 가져야.....57  
[베트남] 소매시장 급성장...한류 열풍도 긍정적.....58  
[브라질]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는 브라질 전국 몸살..폐기물 처리업 전망 '굿'.....59  
[미얀마] 외국계 은행의 직접 진출 가시화.....60  
[인도네시아] 에너지산업 분야 규제 도입 사회·환경적 책임 법령상 의무 규정.....61  
[미얀마] 외국인 투자 길 열린 미얀마 투자 환경 급변..불확실성 사라져.....62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식 ■

##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코리아데스크를 개설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인도네시아 대표적 로펌인 NSMP(Nurjadin Sumono Mulyadi & Partners)와 제휴하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고, 지평지성 소속 권용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사무소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지평지성 코리아데스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형태의 고객 밀착형 법률서비스로,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 현지연수를 마친 권용숙 한국변호사가 주재하면서 NSMP의 인도네시아변호사들 및 지평지성 본사 변호사들과 함께 신속하고 전문성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평지성은 10월 10일 오후 6시(자카르타 현지시각) Grand Hyatt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 기업들을 초대하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및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도 사무소를 열어 동남아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관련 기사]

-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 서울경제(2012. 10. 11.)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설 - 건설경제신문(2012. 10. 11.)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자카르타 코리아데스크 개설 - 아시아경제(2012. 10. 11.)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에 '코리아데스크' 열어 - 뉴스토마토(2012. 10. 11.)

## [인도네시아팀 변호사 소개]



강성 대표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근동 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배상근 변호사



정철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개소식(2012. 10. 10)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 중국 청도리동화공 유한공사의 자산담보부대출(ABL)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청도리동화공 유한공사가 중국 기업 최초로 한국의 특수목적법인에 현지 매출채권 및 은행승태어음을 질권으로 제공하고 자산담보부대출(ABL)을 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주간사인 우리 투자증권, 대주단 및 보증은행 등을 위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본사와 상해사무소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거래구조의 수립,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제반 조세 문제 자문과 한국어본 및 중국어본 제반 계약서 작성, 체결 뿐 아니라 중국 채권질권등기공시시스템에 따른 등록, 대외담보등기 등 담보권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한국법 및 중국법의 제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One Stop Service를 실현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경엄동 중국변호사



최흥화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임승혁 공인회계사

## 한국 법인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특허 소송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특허 소송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이해원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중국 시안 법인 설립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이 중국 시안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고위관리직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고위관리직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의 모범계약 작성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의 모범계약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최흥화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홍콩 법인과의 지분양수도 항소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홍콩 법인과의 지분양수도 항소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의 상해 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직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횡령소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상해 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직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횡령소득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의 지분양수도, 회사정리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의 지분양수도, 회사정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최흥화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법인과 체결하는 독점대리판매계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법인과 체결하는 독점대리판매계약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최흥화 중국변호사

## 한국 모관공서 상해대표처에서 발주한 지적재산권 관련 용역 수행

지평지성은 한국 모관공서 상해대표처에서 발주한 지적재산권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부응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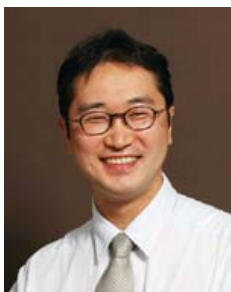
## 롯데마트 베트남 신규 점포 오픈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롯데베트남쇼핑(LOTTE SHOPPING VIETNAM CO.,LTD)을 대리하여 베트남 롯데마트 3호 점 설립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호점은 주변에 대규모 산업 공단과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호아(Bien Hoa)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롯데마트, 2년반만에 베트남 신규 점포 오픈 - 아주경제(2012. 11. 27.)
- 롯데마트 베트남 3호 '동나이점' 오픈 - 연합뉴스(2012. 11. 29.)

###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베트남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

## 한국계 석탄광산회사를 대리하여 석탄광산회사가 보유한 계열 석탄광산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인도(India)계 자본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거래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한국계 석탄광산회사를 대리하여 석탄광산회사가 보유한 계열 석탄광산회사(칼리만탄 소재)의 대주주 지분을 인도(India)계 자본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한승혁 호주변호사

## 한국계 인도네시아 전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갱신 및 종결 기타 노무관리 관련 자문 제공

지평지성은 한국계 인도네시아 전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갱신 및 종결 기타 노무관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권용숙 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한승혁 호주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태국 ■

##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태국 내 공장 매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태국 내 공장 매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정철 변호사

## 태국 내 공장을 매수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에 대한 자문

지평지성은 태국 내 공장을 매수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한승혁 호주변호사



## 태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태국 투자의 법적 형태, 국제 조세상의 쟁점에 대한 자문

지평지성은 태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태국 투자의 법적 형태, 국제 조세상의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한승혁 호주변호사

##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태국 진출에 대한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태국 진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정철 변호사

### ■ 해외업무 사례 - 미얀마 ■

##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 및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미얀마에서 임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투자허가 및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식료품 제조회사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미얀마에서 식료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관련된 미얀마 회사법, 계약법, 외국인투자법 차원의 법적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미얀마 현지 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

지평지성은 미얀마에서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미얀마 현지 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관련된 미얀마 회사법, 계약법, 외국인투자법 차원의 법적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 회사법상 외국회사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미얀마에서 광고업 등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 회사법상 외국회사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 회사법, 계약법 차원의 법적 구조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미얀마에서 토지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관련된 미얀마 회사법, 계약법 차원의 법적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미얀마 현지 제조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

지평지성은 미얀마 현지 제조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관련된 미얀마 회사법, 계약법, 외국인투자법 차원의 법적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

## CJ4DX의 러시아 극장 체인과의 사업협력 및 라이선스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주식회사 CJ4DX를 대리하여 러시아 현지 1위 멀티플렉스 체인 '시네마파크'와의 사업 협력 및 라이선스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CGV, 오감체험특별관 '4DX' 러시아 최초 진출 - SBS E! NEWS (2012. 11. 1.)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포스코 계열사 러시아 모듈러 사업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포스코 계열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모듈러 사업 관련 각종 도급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포스코A&C, 호주·러시아 모듈러시장 진출 - 한국주택신문(2012. 10. 29.)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동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와의 컨설팅계약 체결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동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와의 컨설팅계약 체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한국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UZAVTO와의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대리하여 우즈베키스탄 UZAVTO와의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필리핀 ■

## 대상의 '물엿공장 건설과 합작사업 추진' 관련 자문

지평지성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필리핀 전분당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의 '물엿공장 건설과 합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상은 지난 10월 9일(현지시각) 필리핀 리코 에퀴티즈사와 합작투자계약서 서명식을 가졌고, 올해 연말까지 '대상 리코 코퍼레이션'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물엿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관련 기사]

- 대상, 국내 첫 필리핀 전분당 시장 진출 - 조선비즈(2012. 10. 10.)
- 대상, 필리핀에 물엿공장 - 서울경제(2012. 10. 10.)
- 대상, 필리핀에 물엿 공장 - 매일경제(2012. 10. 10.)

### [담당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 개정 민사소송법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흥화 중국변호사)

지난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롭게 추가한 제도는 주로 공익소송제도, 소액소송에 대한 1심 중심제도, 행위에 대한 보전조치입니다. 아래에서는 새로이 추가된 제도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익소송제도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55조에서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기관 및 관련 조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공익소송을 사건유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률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 및 관련 조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공익소송의 심판원칙, 절차, 책임부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실에서 당장 위 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2) 소액소송에 대한 1심 중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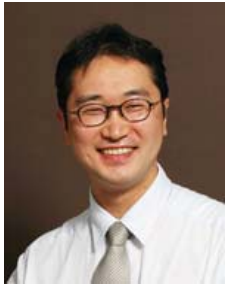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162조에 의하면 소가가 성(省) 기준으로 해당 지역성 직전 연도 취업자의 연평균 급여의 30% 이하인 간단한 민사사건은 1심 중심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데는 사실관계가 명료하고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실무에서 당사자가 심리기간, 집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항소하여 소송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3) 행위에 대한 보전조치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전조치의 대상은 재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판결의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를 끼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게 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하는 제정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게 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하는 것을 신규 보전조치로 규정한 것으로 판결집행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소제기 전에 침해 행위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판결에 앞서 보전조치를 통하여 초상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 (1)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베트남에 진출하는 유통업체들은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양질의 건물을 장기간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분양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일시에 선지급받고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려는 수요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임대기간 동안 건물 소유자 및 건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회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 첫 단계로서 우선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상가 임차권의 근거

베트남에서 임대차 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제18장 제5절 '자산 임대차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특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자산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한국법(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하지만, 베트남법은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많은 부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해결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2) 외국인 투자의 제약

원칙적으로 외국인 개인은 상가를 임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 법인이 상가를 임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에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와 같은 entity를 설립하고 이

러한 entity를 통해서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는 경제 활동의 일환이므로, 외국인인 설립한 entity만이 임차할 수 있습니다.

### (3)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개관

토지법은 모든 부동산의 국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인(私人)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토지사용권 형식으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의 취득과 이전은 관리대장에 등록되며 권리자에게는 토지사용권증서가 발급됩니다.

토지사용권자 또는 토지사용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은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달리 건물의 경우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건물 소유권의 취득 및 이전도 관리대장에 등록되며 권리자에게는 건물소유권증서가 발급됩니다. 2009년경부터는 건물소유권증서와 토지사용권증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권리증서와 등록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는 임차권이 인정됩니다. 한국법(민법)은 용익 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과 채권으로서의 임차권(임대차계약)을 구분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용익 물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채권으로서의 임차권만 인정됩니다.

베트남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권 중 부동산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은 저당권입니다. 토지사용권 및 건물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관리대장에 등록되고 권리증서에 부기되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4) 상가 임차권의 일반적인 대항력 유무

상가 임차권은 등록(한국법상의 등기에 해당)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기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갖는 채권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한국법은 소액 임대차와 같이 보호 필요

성이 큰 경우에는 채권인 임차권도登記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임차권을 등록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 (5) 소유자 변동 사유에 따른 대항력 유무

베트남 법령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예외적인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법령에서 정한 건물 소유자의 변동 사유에 따라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임대인의 임의 처분

주택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주택을 사용할 수 있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보호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며(한국에서도 주택이 상가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권은 계약에 기한 채권적 권리이므로 예외적인 대항력의 인정은 특별한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권은 건물 양수인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② 담보권(저당권)의 실행

임대차계약이 저당권 설정 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습니다(임차인의 계속 사용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이 임대차계약 체결보다 앞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저당권 실행의 경우에 이렇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과 저당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임대인)의 통지를 통해 선순위 임차권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에, 등록과 같은 공시의 효과가 있고,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③ 강제집행 및 파산

임대인의 채권자들이 임대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임대인의 파산으로 건물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시와 같이 임대인이 미리 이해관계자(채권자)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통지하는 등의 공시 방법을 둘 수 없습니다. 즉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물이 강제집행되거나 임대인의 파산으로 경매될 경우에는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 (6) 결론

임차권은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임대차계약에서 건물 소유자의 변동 시 임차권 승계 조항을 명시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 안전을 해할 뿐만 아니라, 등록할 수 있는 권리와 등록할 수 없는 권리를 구분하는 법체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령상 임차권의 대항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담보권 설정을 등록한 경우와 주택 임대인이 임의 처분한 경우뿐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임대인이 임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이 등록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이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여 임차권 승계를 하지 않으면 건물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정부(공산당)가 인민을 계도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베트남의 특수한 현실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에게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7) 보론 - 보증금의 우선변제력 및 비용상환청구권 유무

베트남의 거래 관행상 임차인이 2개월 내지 6개월 치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예치해두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미지급 임대료나 건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치금 금액이 크지 않아 한국에서와 같이 예치금(일종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베트남 법령에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력을 인정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즉 임대 목적이 강제집행되거나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고, 조세, 임금, 등록된 담보권 등 우선 순위의 채권자들이 변제받은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안분 비례하여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민법)과 달리 베트남 법령은 임차인이 부담한 유익비나 필요비 등의 비용을 상환받거나,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비용상환 또는 부속물 매수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 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태국 ■

## 태국의 경쟁법 집행 절차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재형 변호사 · 태국 사무소장)

태국의 경쟁법 The Competition Act는 우리나라보다 약 20여 년 늦은 1999년에 제정되었는데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경쟁 정책의 운용과 실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분야의 법률 집행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최근 몇 가지 비관세 무역 장벽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경쟁법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태국 경쟁법의 집행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경쟁법은 부당한 가격 설정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제25조), 독점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하는 합병과 계약 관계 규제(제26조, 제27조), 개인적 소비를 위한 병행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제28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는 행위의 금지(제29조) 등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합니다(제30조).

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검사가 형사적 제재 뿐만 아니라 비형사적 제재 조치도 취하며 형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는 3년 이하의 징역과 6백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의 경우 이 처벌 상한이 2배로 늘어납니다. 기업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직접 명령하는 경우는 특별 조사위원회를 거치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 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으며 역시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2-6백만 바트의 벌금 및 위반 지속 일수 하루 당 5만 바트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미얀마 ■

## 미국의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완화(General License 18)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012년 11월 16일 공동 성명서에서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지지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광범위하게 적용된 미얀마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sup>1</sup>

이번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 완화는 지난 9월 말 테인세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에 미국 정부가 약속하였던 내용인데, 당시 미 국무부장관인 힐러리클린턴은 미얀마의 지속적인 개혁에 맞추어 미국과 미얀마의 경장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환으로 미얀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sup>2</sup>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2012년 11월 16일 General License 18<sup>3</sup>를 발급하여, 일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미얀마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수입이 금지되는 일부 제품은 미얀마에서 채굴된 비취(jadeite), 루비(ruby) 및 비취, 루비를 포함하는 제품입니다. 이번 General License 18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수입업자는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비취 및 루비 제품 제외)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크게 (i) 금융서비스 수출에 대한 제재, (ii) 신규 투자에 대한 제재, (iii) 미얀마 생산품의 수입에 대한 제재, (iv) 특정지정인목록에 등재된 개인·법인 및 이들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그리고 (v) 위 제재에 따라 금지된 거래를 촉진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sup>1</sup> Administration Eases Ban on Imports from Burma,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2. 11. 16.)

<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tg1772.aspx>

<sup>2</sup> Clinton says U.S. to ease Myanmar import ban, 로이터통신 (2012. 9. 26.)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9/27/us-un-assembly-myanmar-usa-idUSBRE88P1S820120927>

<sup>3</sup> General License 18, 미국 재무부 (2012. 11. 16.)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gl18.pdf>

미국 재무부는 2012년 7월 11일 General License 16<sup>4</sup>와 General License 17<sup>5</sup>를 발급함으로써 미국인에 의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미얀마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출을 허용(General License 16, 위 제재 중 (i) 제재 완화)하고 미국인의 미얀마 신규 투자를 허용(General License 17, 위 제재 중 (ii) 제재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6일 General License 18이 발효됨으로써 비취 및 루비 제품을 제외한 모든 미얀마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위 제재 중 (iii) 제재 완화). 이에 따라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위의 제재 중 (i), (ii) 및 (iii)의 제재는 완화되었고, 나머지 (iv) 및 (v)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 제재 중 (iv)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이하 '특별지정인목록'<sup>6</sup>)의 주요 인사 및 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얀마에서 부정행위나 인권침해 등을 범한 기관 및 고위직 관료들 또는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 특별지정인목록에 기재되는데, 미얀마에 소재한 은행과 주요기업 상당수가 이 특별지정인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인은 제재관련법령에 따라 이 목록에 등재된 자와 거래를 할 수 없고, 미국 정부는 이들의 자산과 이에 대한 권한을 모두 차단하여야 합니다.

---

<sup>4</sup> General License 16, 미국 재무부 (2012. 7. 11.)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gl16.pdf>

<sup>5</sup> General License 17, 미국 재무부 (2012. 7. 11.)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gl17.pdf>

<sup>6</sup> 특별지정인 목록은 아래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

■ 해외업무 논단 - 브라질 ■

## 브라질 외국인 투자가이드 (5) - 제조업을 위한 공장신축 시 유의 사항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아래에서 설명하는 유의 사항은 브라질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장이 위치하는 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브라질에는 5,000개 이상의 시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브라질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상파울루 시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1. 도시계획 관련

브라질에서는 인구 2 만 명 이상의 시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법률 제 10,257 호). 인구 2 만 명 미만인 시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들은 통상 해당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시의 구역 중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존재 여부와 도시계획에 따라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파울루 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도시구역이 주택지대, 공업지대 및 혼합지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장 건설은 공업지대와 혼합지대에서 가능합니다. 각 지대에 따라 공장 건설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토지이용허가 관련

공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장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단 이외의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하는 장소가 시 정부의 토지편제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입주 전에 공장 설립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3. 건축허가 관련

공장 건설이 허용되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시 정부는 해당 시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발급하게 됩니다. 상파울루 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발급에 관하여 시 법률(제 11,228/92 호) 및 시 규정(제 32,329/92 호)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파울루 시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허가(Alvará de Aprovação)와 시공개시 허가(Alvará de Execução)의 두 가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 건축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빙, 토지 관련 세금고지서, 공사에 대한 개요 및 일정 등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부지 인근 경계에 관한 확인(Alvará de Alinhamento e Nivelamento), 임시 건물 건축 등에 관한 허가(Alvará de Autorização)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완공확인(Certificado de Conclusão)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4. 환경허가 관련

일반적으로 공장은 오염물질배출지로 간주되므로, 공장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환경허가가 요구됩니다. 상파울루 주의 환경보호 및 환경허가는 주 법률(제 997/76 호)과 주 규정(Decreto Estadual, State Decree) 제 8,468 호에 의해 규율됩니다. 환경허가는 사전허가(Licença Prévia), 설치허가(Licença de Instalação) 및 운영허가(Licença de Operação)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사전허가는

프로젝트 장소확정, 설치, 가동에 대한 전반적 허가이고, 설치허가는 시공단계에 대한 허가이며, 운영허가는 완공 후 운영단계에 대한 허가입니다.

상파울루 주 경우에는, 산업에 따라 상파울루 주 환경청 또는 상파울루 시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들은 환경허가 종류, 산업 종류 그리고 관할 환경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일본 ■

노동자파견법 개정안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일본에서 2012년 10월 1일부터 노동자파견법(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안은 1985년 성립 이후 5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개정 전의 노동자파견법이 파견노동자의 업종확대,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투명한 대우, 고용안정성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지적과 최근의 경제상황에 따른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2008년의 아키히바라 무차별 상해사건 및 일용직노동자의 확산으로 인한 워킹푸어 및 넷트 카페난민의 증가라는 사회적 부작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p>사업규제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직파견(일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두어 고용하는 노동자파견)의 원칙적 금지(적정한 고용관리에 지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의 경우, 고용기회의 확보가 특별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li> <li>▪ 그룹기업 내 파견의 8할 규제</li> <li>▪ 이직한 노동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파견노동자로 고용하는 것 금지</li> </ul>
<p>파견노동자의 무기고용화 및 대우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회사의 사업주에게, 일정한 유기고용의 파견노동자에 대하여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추진조치 노력의 의무화</li> <li>▪ 파견노동자의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처 노동자와의 균형을 고려</li> <li>▪ 파견요금과 파견노동자의 임금차액이 파견요금에서 점하는 비율(마진율) 등의 정보공개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 등의 경우 파견노동자에 대하여 1인당 파견요금 액을 명시</li> <li>노동자파견계약 해제 시 파견회사 및 파견처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취업기회의 확보, 휴업수당 등의 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의 조치 의무화</li> </ul>
<p><b>위법파견에 대한 대처 보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법파견의 경우, 파견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파견처가 파견노동자에 대하여 노동계약을 청약한 것으로 인정(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li> <li>행정처분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파견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를 정비</li> </ul>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파견노동자의 보호와 고용안정을 강구하였다는 점입니다. 우선, 일용직 파견의 범위를 종래의 2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고, 관계파견처로 노동자파견시의 제한규정을 두어 관계파견처(모회사와 연결자회사간에 적용)에서 고용하는 파견노동자의 비율이 8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업무 및 고용기회 확보가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sup>7</sup> 이외에는, 일일고용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규정하여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파견이 금지되며, 이직한 노동자를 이직 후 1년 내에 파견노동자로 재고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사업규제와 함께, 파견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강구 차원에서, 파견회사의 사업주에게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 즉 사업소 별 파견노동자의 수, 노동자파견 용역제공을 받은 자의 수, 노동자파견에 관한 요금액수의 평균액에서 파견노동자 임금액의 평균액을 공제한 액수의 비율(마진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기고용 파견노동자를 무기고용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법파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정고용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법파견이란, 금지업무에 대한 파견고용, 무허가, 무신고 파견회사로부터의 파견노동자 고용, 기간제한을 초과한 파견노동자 고용 등을 의미합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파견노

<sup>7</sup> 60세 이상의 고령자, 주간학생, 부업으로 종사하는 자, 주요 생계원이 아닌 자

동자를 고용한 경우, 파견처가 파견노동자에게, 파견회사와 동일노동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みなし雇用)됩니다(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 ■

## 러시아 경쟁매매 제도 일반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송명건 러시아변호사)

2000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이상 성장하던 러시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및 도산 등으로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도 추진되면서 경쟁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경쟁매매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경쟁매매 등 이전보다 쉽고 편리한 방안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 경쟁매매 제도, 그 중에서도 러시아 민법에 정하고 있는 공개경쟁 매매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경쟁매매의 개념 및 특징

러시아민법 제 448 조 제 1 항에 따르면 경쟁매매의 유형을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은 다시 각각 경매(Аукцион)와 입찰(Конкурс/тенде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매매에는 개인 및/또는 법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나, 제한경쟁 매매에는 해당 매매에 목적에 따라 특별히 초청된 개인 및/또는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편, 경쟁매매의 유형 중 경매는 최고가를 제출한 자가 낙찰을 받는 반면 입찰은 최고의 조건을 제안한 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저당권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등에 따라 해당 재산들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구분	공개경쟁		제한경쟁	
	경매	입찰	경매	입찰
1. 참가자	모두 가능	모두 가능	특정인만 가능	특정인만 가능
2. 선정 기준	최고가	최고조건	최고가	최고조건

## 2.

### 경쟁매매 방식의 결정

경쟁매매 방식은 법률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매각 물건의 소유권자 또는 재산권 보유자가 결정합니다(러시아민법 제 447 조 제 4 항). 경쟁매매의 진행 시 물건의 소유권자 또는 재산권 보유자는 별도의 경쟁매매 주관사를 선정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물건의 소유권자 또는 재산권 보유자가 직접 경쟁매매 업무를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외부의 전문 주관사를 선정하여 경쟁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3. 경쟁매매의 절차

### 가. 공고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쟁매매 주관사는 경쟁매매 개최 30 일 전까지 경쟁매매 시행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고에는 경쟁매매 참가절차, 낙찰자 선정 방법, 최초매각금액을 포함한 일시, 장소, 경쟁매매 방식, 경쟁매매 대상, 진행절차에 관한 정보가 명시됩니다(러시아민법 제 448 조 제 2 항).

### 나. 보증금 납부

경쟁매매 참가자는 경쟁매매 시행 공고에 명시된 금액, 기간,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쟁매매 참가자가 1 인 이하인 경우 이러한 경쟁매매는 유찰된 것으로 간주되며, 참가자들에게 보증금은 반환되며, 경쟁매매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한편, 경쟁매매에서 낙찰받은 자는 추후 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 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러시아민법 제 448 조 제 4 항).

#### 다. 경쟁매매 결과 조서(계약서) 작성

경쟁매매 개최일에 낙찰자와 주관사는 계약과 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경쟁매매 결과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해당 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아니하고 몰수됩니다. 반면에 주관사가 경쟁매매 결과 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주관사는 보증금의 2 배를 지급하고 낙찰자가 경쟁매매 참가에 따라 입은 손해 중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러시아민법 제 448 조 제 5 항).

#### 라. 경쟁매매의 취소

주관사는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경쟁매매 개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일 3 일 이전까지 그리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30 일 이전까지 취소하여야 합니다. 주관사가 이러한 기일을 위반하여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주관사는 경쟁매매 참가들에게 발생한 실질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민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주관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제한경쟁과 달리 공개 경쟁의 경우 경쟁매매 참가 준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마. 경쟁매매 규정위반의 효과

법률이 정한 경쟁매매 규정을 위반하여 경쟁매매가 진행된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해당 경쟁매매를 무효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와 주관사가 체결한 계약, 즉, 경쟁매매 결과 조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상사 대법원은 경쟁매매 전체를 무효로 보기 보다는 절차상의 개별행위(거래)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결과면에서는 낙찰자와 주관사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소송 원인 중 하나는 러시아민법 및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 절차의 하자(최초매각금액, 일시, 장소, 경쟁매매 방식의 누락 등)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민법에서는 매우 개략적인 경쟁매매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고, 경쟁매매의 세부 절차, 형식, 요건, 특별규정 등은 개별 연방법률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 기업들도 경쟁 매매 방식을 통해 자산 및 각종 권리를 매각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일반적인 매매방식 뿐 아니라 이러한 경쟁매매 방식을 통한 자산인수 및/또는 기업인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 중국, 고온 환경에서의 실외 작업 관련 규정 발표

지난 6월 29일,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서는 연합으로 「냉방조치 관리방법(防暑降溫措施管理辦法)」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법은 1960년도에 발표한 「냉방조치 잠행방법」을 개정한 것으로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시간 제한, 고온수당 지급 등 여러 방면에서 규정을 더욱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동 방법은 주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1) 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일 경우 실외작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2) 35도 이상에서 실외 작업하는 경우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3) 고온 작업으로 열사병이 발생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4) 고온으로 인한 조업중단, 조업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공제하거나 인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지난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동 개정안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소가가 작은 사건에 대하여 1심 중심제를 적용하고, (2) 법원의 합의관할과 관련하여 반드시 분쟁과 현실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하여야 하고, (3) 법원은 이메일, 팩스 등 방식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고, (4) 법원에서 사건을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재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5) 이미 발효된 판결에 잘못이 있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발견한 제3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기존의 판결에 대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6)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외 행위에 대한 보전 조치를 추가하였으며, (7) 악의적인 소송을 엄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8) 공익소송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 중국, 교통운송 일부 업종 행정인허가 취소

지난 9월 23일, 국무원은 「제6회 행정인허가 항목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의하면 무려 314개의 행정인허가 항목이 취소되거나 조정됩니다. 그 중 교통운수영역과 관련하여서는 10여 개의 행정인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예컨대, 외국국제도로운수경영자와 외국선박검사기구는 사전 인허가가 없이 직접 중국에 대표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기존의 교통운수부서의 국내수로화물운수대리, 선박대리 인허가도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외상투자도로여행객운수경영자, 국제선박운수기업, 국제선박대리기업 등의 설립 및 변경에 대한 인허가 주무 부서는 기존의 성급 상무부서로부터 지방 상무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World Bank의 제언

베트남 헌법 제17조와 제18조는 “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는 모든 토지가 법률과 계획에 의거하여 효율적이고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유화 원칙으로 인하여 베트남에서 부동산 투자와 거래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그 제약이 더욱 심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베트남 국회는 2012년 8월 31일 토지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국회의 제안은 법개정을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향후 많은 연구와 협의를 통하여 보다 정제된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2년 11월 5일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토지법 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sup>8</sup>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한정된 토지 자원에 대한 효율적이며 공정한 관리가 토지 사용에 관계된 당사자는 물론 베트남의 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제언이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선 효과를 우선 순위별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4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용 토지사용권 유지와 효율성 강화, 둘째는 토지 보상과 취득의 공정성 및 투명성, 셋째는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 마지막으로 국가 토지정책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분류하여 제언하고 있습니다.

현행 토지법 조문은 146개 조항이나 국회의 개정안은 190개 조항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개별 조문에서 국가기관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명료하게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토지법 개정안은 세계은행이 보고서에서 제언했듯이 중앙 권력에 집중된 권한을 개별 행정 부처와 지방으로 이양, 분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 여성,

<sup>8</sup> 첨부 원문 : “Revising the Land Law to Enable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tnam” by THE WORLD BANK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토지 사용상 권익이 증대됨은 물론 토지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sup>9</sup>

한정된 토지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는 어떤 국가 정체(政體) 하에서나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함을 체감하는 척도가 되고, 투자자들이 사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성장 및 안정성을 제고함에 있어 핵심 기제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토지법의 개정 논의가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토지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게 되고 부패를 통제하는 데 일조하여 베트남이 중진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sup>10</sup>

<sup>9</sup> Quốc tế khuyến nghị VN sửa luật đất đai - BBC Vietnamese (2012. 11. 7.)

<sup>10</sup> Institutional Reforms Will Strengthen Vietnam's Land Management System, Improve Transparency and Control Corruption – The World Bank (2012. 11. 5.)

Land reforms to balance interests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2012. 11. 8.)

■ 최신 해외정보 - 라오스 ■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성황리에 개최, 라오스 경제성장률 주목

제9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지난 11월 5일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ASEM은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하여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정상과 각료가 참석하는 중대한 국제적 이벤트인데, 이를 아시아의 최대 개발도상국인 라오스가 개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라오스는 수출 주도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오스는 지난 수년간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유지한 동남아 지역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올해에는 광산개발과 수력발전 사업성과에 힘입어 8%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라오스 WTO 가입 승인

지난 10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특별회의에서 라오스의 WTO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는 이번 가입안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WTO에 통지만 하면 WTO의 회원국이 됩니다. 라오스는 1997년 WTO가입을 신청한 이래 WTO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개정 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관세 한도 제한, 해외자본의 진입 규제 완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등에 특별히 신경을 써 왔습니다. 라오스의 WTO가입을 계기로 라오스와 우리나라 간의 통상협력관계도 더욱더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태국 ■

## 태국 법인세율 인하

태국의 법인세율이 30%에서 2012년 23%로 인하되었으며, 2013년에는 20%로 인하됩니다. 요건을 구비한 국제 조달 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의 경우 15%의 법인세율이 5년간 적용되며 최대 3명의 간부급 직원에 대해 15%의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구비한 지역 운영 본부(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의 경우 로열티, 서비스료, 이자 수입에 대해 10년간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8년간 15%의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미얀마 ■

## 글로벌 보험사들의 미얀마 진출

미얀마의 보험 시장은 1963년 이후 유일한 국영 보험회사인 미얀마보험회사(Myanmar Insurance Company)에 의해 독점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재경부 산하 보험업감독원(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Board)은 지난 2012년 4월 미얀마 보험업의 민영화를 선언하고, 6월까지 20여 개 민간기업의 보험업 허가신청을 받아서, 9월 5일 12개의 민간업체<sup>11</sup>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본금은 생명보험 전업의 경우 60억 짜트(또는 \$7 million), 생명보험과 일반보험(General License)<sup>12</sup>을 동시에 영위하기 위해서는 460억 짜트(또는 \$53 million)가 필요하고 납입자본의 40% 이상을 은행계좌에 유지해야 합니다.<sup>13</sup> 이 기업들은 보험업감독원의 검토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보험시장 개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보험업의 허가와 감독을 담당하는 재경부 차관이 미얀마 국내 민간보험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난 후에는 보험시장을 개방할 것이고, 그 시기는 2015년 정도가<sup>14</sup>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추어,<sup>15</sup> 미얀마 정부가 보험시장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보험사들의 미얀마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푸르덴셜, 홍콩 AIA그룹, 캐나다 매뉴라이프 등 세계적인 보험사들이 미얀마 진출을 고려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도쿄해상, 손보재팬, 미쓰이스미토모가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sup>16</sup>

<sup>11</sup> 현재 생명보험 3개사, 생명보험 및 일반보험 9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sup>12</sup> 일반보험에는 총 5종이 있으며, 이는 자동차보험(car insurance), 화재보험(fire insurance), 환전보험(money exchange insurance), 현금이체보험(cash transfer insurance) 및 귀중품보험(insurance of valuables)을 말합니다.

<sup>13</sup> 선정된 예비 보험업자들이 보험업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정식 허가를 받는 경우 3백만 짜트의 라이선스 수수료와 1백만 짜트의 연회비를 미얀마 보험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sup>14</sup> 미얀마 정부가 최소한 3년의 보호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약 50년 동안 국가가 보험산업을 독점해 왔으므로, 미얀마의 민간 보험업자들이 보험업에 대한 노우-하우를 축적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위험 예측 및 요율 산정에 미숙하여 해외 경쟁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sup>15</sup> 재경부 차관 마웅마웅테인(Dr. Maung Maung Thein)의 2012년 9월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9/14/us-myanmar-insurance-idUSBRE88D0T220120914>

<sup>16</sup> "글로벌 보험사 '미얀마로 가자'" 한국보험신문(2012. 11. 19.)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37227&firstsec=1&secondsec=15](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37227&firstsec=1&secondsec=15)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의 보험시장은 매년 보험 프리미엄 기준으로 미화 16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sup>17</sup> 미얀마는 1963년 국유화되기 이전에는 외국보험사를 포함하여 70여 개의 민영보험사가 있었을 정도로 보험시장이 활성화된 곳이고, 머지않아 베트남 보험시장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sup>18</sup>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경제제재 완화와 미얀마의 시장개방에 따라 보험사의 미얀마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얀마의 민주화 및 시장개방에 따라 국제적 지원 이어져

미얀마의 민주화 및 시장개방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2년 11월 1일 미얀마에 대한 개발원조자금으로 8,000만 달러를 승인하였고, 추가로 1억 6,500만 달러의 추가 차관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sup>19</sup>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9일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총 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미얀마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sup>20</sup> 일본 정부는 27년 만에 미얀마에 대한 500억 엔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sup>21</sup>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이 미얀마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빈곤 축소를 돕기 위해 미얀마 개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2012년 10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sup>22</sup> ADB는 미얀마 정부와 '중간국가협력전략(Interim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합의하였는데, 중간국가협력전략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민사회, 민간영역 등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sup>23</sup>

<sup>17</sup> "Analysis: Foreign insurers enter Myanmar market with hope, caution", 로이터통신(2012. 11. 7.)

<http://www.reuters.com/article/2012/11/07/us-insurers-myanmar-idUSBRE8A60YL20121107>

<sup>18</sup> 로이터 통신, 위 기사 참조.

<sup>19</sup> "세계은행, 미얀마에 개발원조 8,000만 달러 승인", 뉴시스(2012. 11.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806119>

<sup>20</sup> "오바마, 사상 첫 미얀마 방문 1억 7천만\$ 지원계획 발표", 뉴스1(2012. 11. 19.)

<http://news1.kr/articles/899672>

<sup>21</sup> "日, 미얀마에 500억 엔 차관 제공키로", 머니투데이(2012. 11. 1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1816470143202&outlink=1>

<sup>22</sup> "ADB Moves Towards Re-engagement in Myanmar", 아시아개발은행(2012. 10. 26.)

<http://www.adb.org/news/adb-moves-towards-re-engagement-myanmar>

<sup>23</sup> 아시아개발은행, 위 기사 참조.

## ■ 최신 해외정보 - 브라질 ■

### 브라질,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 가속화

브라질에서는 인터넷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온라인을 이용한 제품 판매 및 유통 시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용 보안 프로그램 등 관련 산업에의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포레스터는 브라질의 온라인 소매판매가 2017년까지 25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모바일상거래 부문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브라질 인구의 50%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12%가 스마트폰 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330만 명이 스마트폰 बैं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은행연합회는 2017년까지 약 5,000만 명이 스마트폰 बैं킹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브라질 전력공사, 최종 소비자들의 직접 전력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

2012년 4월, 브라질 전력공사(ANEEL)는 최종 소비자들이 직접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여 소규모(100KW이하 또는 100KW~1MW)로 전력 생산을 하는 경우 남은 전력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전력은 36개월 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적립된 전력은 로컬 송전소로 보내 전기요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안은 그린 에너지에 속하는 수력, 바이오매스, 풍력을 이용한 자가 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브라질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최종 소비자들의 자가 발전이 늘어날 경우, 관련 장비 시장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브라질, 상파울루 주 상업등기소, 전자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브라질 상파울루 주 상업등기소(JUSEP)는 2012년 6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을 위해 전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자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은 상파울루 주 상업등기소의 전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사용자가 회사 등록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회사 등록 초기 단계에서는 법인 대표가 아닌 변호사, 회계사, 기타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파울루 주의 경우 전자 공인인증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공식 유관부서는 'Imprensa Oficial'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소수력발전 추진에 대한 규제완화**  
**- 국토교통성, 내년에 하천법 개정안 제출 방침**

국토교통성은 재생가능 에너지인 소수력발전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농업용 수로에 발전소를 만드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허가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그 사무절차 기간을 현재 평균 5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소수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잡했는데, 새로운 제도에서는 수리권을 가지는 농가의 양해를 얻는 등의 조건을 미리 규정하여 이것을 충족한 사업자는 모두 등록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마루베니나 대형 건설 컨설팅회사인 일본공영도 소수력발전을 건설 중이고, 또 고치현이나 에히메현 등의 자치체도 소수력발전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 외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토지개량구역이 직접 발전을 한다면, 수리권을 활용한 매전수입이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중권 매매로 새로운 도심개발가능성**

동경역 역사의 복원공사가 끝나 요번 달부터 전면 오픈하는데, 건설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투입한 자금을 공중권(이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라 민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실제로는 용적률을 의미합니다)을 매각하여 조달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아래 사진).



東京駅の容積率は周辺の6棟のビルへ移転された

	移転前の容積率	移転後の容積率	移転前後の増減幅
東京駅	900%	208%	-692%
①新丸の内ビルディング	1300%	1665%	365%
②丸の内パークビルディング	1300%	1430%	130%
③JPタワー	1300%	1520%	220%
④東京ビルディング	1000%	1266%	266%
⑤グラントウキョウノースタワー	900%	1304%	404%
⑥グラントウキョウサウスタワー	900%	1304%	404%

[사진 출처 : 닷케이 온라인 2012년 10월 12일자]

복원된 동경역 마루노우찌 역사는 지하 2층, 지상 3층(일부 4층) 역사를 저층으로 하고, 개발하지 않은 역 상공부분의 권리인 공중권을 주변 개발빌딩에 매각하였는데, 이러한 용적률매매가 가능하게 된 계기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이 2000년에 개정되어 특정 지역에서 용적률을 개발물건 사이에 이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의 매각가격은, 동경역을 한계용적률로 설계하여 상층부를 오피스로 임대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료에서 산출하였는데, 세제면에서는 용적률의 이전에 대한 토지거래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정

러시아연방 노동부는 2013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쿼터를 174만 5천명으로 확정 했습니다. 2013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쿼터는 2012년 대비 30%(519,677명 추가)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쿼터는 러시아 노동 시장 현황, 인구 현황, 자국 노동인력의 우선고용원칙, 직전년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 스콜코보 외국인 투자자 비자 특례안 하원 제출

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의 대표와 직원들의 장기 비자 취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러시아연방 출입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두마(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내 국제금융센터와 스콜코보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업의 대표와 직원들은 5년 기한의 복수 비자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현재는 1년 기한의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 국제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 간소화

2012년 11월 「러시아연방 출입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 러시아가 체결하는 양자간 국제조약에 따라 조약 상대방 국가의 국민들(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도 러시아와 비자면제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이 되는 경우 러시아 방문의 보다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 [태국] 회복 중인 태국 경제, 생산·수출 증가세...M&A 관심 가져야

태국 경제의 회복세는 민간 소비 및 투자가 확대되고 제조업 분야의 생산과 수출이 홍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심리의 지속적인 호전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내수 산업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연속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반적인 민간 경기 심리 호전으로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홍수에 따른 공급 사슬 손상이 복구되면서 상용차 판매량, 자본재 수입량 등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났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물가는 높아졌지만 실업률은 0.6~0.8%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4월의 최저임금 40% 인상으로 방콕 등 7개 주의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이 16.2% 증가했다. 일부 연구소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잘 적응하고 작년과 같은 대규모 홍수 피해가 없다면 2012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26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중략)

정재형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 제865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 [베트남] 소매시장 급성장...한류 열풍도 긍정적

올 들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적을 불문하고 서로 앞다퉈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분야로 유통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이 뜨겁게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내수 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학습 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매시장 매출은 4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6%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의 가구별 소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베트남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매시장의 성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AT커니는 베트남 소매시장 매출이 조만간 113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성공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진출할 시기를 놓쳐버린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제2의 중국으로 인식되고 있다...(중략)

정정태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베트남 법인장

- [제866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 [브라질]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는 브라질, 전국 몸살...폐기물 처리업 전망 '굿'

브라질 전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브라질 특수 및 일반 폐기물처리업체협회(Abreip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이 하루에 1인당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2009년에 이미 1.152kg에 이르러 1.2kg인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 2010년 브라질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6000만 톤 정도로 전년 대비 1.8%나 증가했다. 최근 브라질 중산층의 소득 증가에 따라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포장지와 같이 썩지 않는 폐기물이 늘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배출된 폐기물 중 10%는 수거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 중 42%가 부적합한 지역에 매립됐고 재활용률은 2%에 그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논의됐던 '고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극적으로 통과시켰고 2010년 8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다...(중략)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중남미팀장

- [제867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 [미얀마] 외국계 은행의 직접 진출 가시화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 온 미얀마의 개혁 정책이 금융·보험업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최근 11개의 미얀마 민간 은행에 미국 달러화, 유로화 및 싱가포르 달러화 3종의 외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2014년부터는 외국계 은행들이 미얀마에 합작 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1963년 이후 민간에 허용되지 않았던 보험업에 대해서도 민간 보험사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미얀마에서는 종래 중앙은행 이외에 3곳의 국영은행이 있고 민간은행들도 다수 영업을 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내 예금 및 대출 업무 이외에 외환 거래, 신용장(LC) 개설 등의 업무는 국영은행인 미얀마투자자산업은행(MICB)과 미얀마무역은행(MFTB)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달러화 송금 제재로 직접 달러화 송금이 불가능하고 업무 협약 관계에 있는 소수의 은행들과 장부 차감 방식에 의한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었다...(중략)

####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제868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에너지산업 분야 규제 도입, 사회·환경적 책임 법령상 의무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너지 자원 산업 분야에 관한 법령을 무리하게 빈번히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에너지 자원 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이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정부령 2012년 제47호가 제정됐다. 이 정부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회사법 제74조 제4항의 이행 법령 형식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대상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 천연자원과 관련된 기업이다.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Mauritius)는 1995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수익의 2% 상당을 회사 내에 적립할 의무를 부과했고 이러한 의무 수행을 감독할 국가 기관(CSR Committee)을 설립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매 6개월마다 의무 이행 사항을 감독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 시스템을 두고 있다...(중략)

권용숙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 [제869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 [미얀마] 외국인 투자 길 열린 미얀마, 투자 환경 급변...불확실성 사라져

지난 4월 2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압승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서방의 경제 제재 중단 혹은 해제에 대한 언급이 외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11일 미국 재무부의 행정규칙인 일반적인 허가(General License 16, 17)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얀마의 국방부와 비정부 무장 단체 혹은 이들이 소유하는 단체 등과의 금융거래를 제외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승인했다. 또한 위 제한 그룹과 관련된 투자를 제외한 미국인에 의한 신규 투자를 일반적으로 승인했다.

최근까지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힘들었던 이유는 서방에서의 경제 제재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이지 않은 미얀마 내 환경도 한 몫했다. 우선 충분하지 않은 토지 공급이 문제였다. 미얀마 부동산양도금지법상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미얀마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해 부동산을 임차할 수 없다...(중략)

유정훈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미얀마 사무소장

- [제870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